

간호학과 내규



**호산대학교**  
**Hosan University**

## 내 부 관 리 요 령

1. 학과내규의 관리책임자는 학부장이 담당한다.
2. 내규를 제·개정 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개정안을 대학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내규의 제·개정이 완료되면 학과의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의 교체 시 반드시 인계인수하고 관리 현황표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목 차

제1장 간호학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1
제2장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규 .....	6
제3장 간호학과 실습교육운영 내규 .....	9
제4장 간호학과 실험실습비 운영 내규 .....	18
제5장 간호학과 학생지도 운영 내규 .....	21
제6장 간호학과 기자재 확보 및 유지·관리 내규 .....	23
제7장 간호학과 장학지원 내규 .....	26
제8장 간호학과 위원회 내규 .....	28
8-1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	28
8-2 간호학과 인사위원회 .....	30
8-3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 .....	32
8-4 간호학과 예산심의위원회 .....	34
8-5 간호학과 장학위원회 .....	37
8-6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	38
8-7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 .....	40
지침 .....	41
1.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지침 .....	41
2. 간호학과 실습실 실습 학생안전 및 인권보호지침 .....	46
3. 사고 대응 매뉴얼 .....	48
4. 간호학과 임상실습 비상연락망체계 .....	53
5. 간호학과 실습실 실습 비상연락망체계 .....	54
별지 .....	55
제 1호 서식. 공인출석계 .....	55
제 2호 서식. 임상실습 사고보고서 .....	56
제 3호 서식. 교내실습 사고보고서 .....	57
제 4호 서식. 학과발전기금 장학금신청서 .....	58
제 5호 서식. 물품(분실·손실·파손) 보고서 .....	59

## 제1장 간호학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0. 02. 24.

개정 2012. 11. 27.

개정 2015. 03. 01.

개정 2015. 12. 19.

전면개정 2016. 03. 01.

일부개정 2019. 02. 25.

일부개정 2020. 03. 0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지칭함)규정에 의거 **간호학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5.03.01><개정 2016.03.01>

**제2조(적용범위)** 간호학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 따른다. 단, 대학 규정과 반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총장의 결재 하에 시행한다.<개정 2016.03.01>

### 제3조(학부장, 학과장, 부학과장)

① 학과에 학부장, 학과장, 부학과장(평가팀장) 각 1인을 두며 간호학과 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

② 학부장, 학과장, 부학과장(평가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27><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

③ 학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6.03.01><개정 2020.03.05>

1. 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간호학과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0.03.05>

2. 학부장은 간호학과를 대표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인사 및 예산 등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3. 학부장은 학과 내·외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학과운영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 03.01>

4. 학부장은 간호학과를 대표하여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5. 학부장은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예산을 확보한다.<신설 2020.03.01>
  6. 학부장은 학과내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재개정하며 관리의 책임을 진다.<신설 2020.03.05>
  7. 기타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학부장의 직무로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 ④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간호학과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19><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
1. -삭제-<삭제 2015.12.19>
  2. 학사업무를 수행한다.
  3. 학생업무를 수행한다.
  4. 학과교수의 업무분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한다.
  5. 학과장은 간호학과를 대표하여 대학 운영 관련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인사 및 예산 등 의사결정에 참여한다.<신설 2015.12.19>
  6. 학과장은 간호학과 예산심의위원회, 간호학과 인사위원회, 간호학과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19.02.25.>
  7. 학과장은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학과 지원인력인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를 확보하여 업무분장하고 관리한다.<신설 2020.03.05.>
  8. 기타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학과장의 직무로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5.12.19.>
- ⑤ -삭제- <개정 2012.11.27><삭제 2015.12.19>
- ⑥ 부학과장(평가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02.25><개정 2020.03.01>
1.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팀장으로서 평가실무를 담당한다.
  2. 간호교육인증평가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과 교수의 업무분장을 할 수 있으며 평가업무 진행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한다.
  3. 부학과장(평가팀장)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4. 기타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학과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학과장의 유고 시 학과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학과 교수회의)

- ① 학과 교수회의는 간호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3.01><전면개정 2020.03.05>
  1. 학생업무 :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학생지도, 학생 후생과 복지, 장학, 포상 및 징계, 교과 외 활동<개정 2012.11.27>
  2. 학사업무 및 강좌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학과업무 수행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팀장의 업무지휘에 따른 역할 수행
  4. 학과 교수 연구실, 실험실습실, 강의실 등의 유지, 보수, 관리<개정 2012.11.27.>
  5. 학과 제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7.>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27>

#### 제5조(학과 교수)

- ① 학과 교수는 학부장의 지휘에 따라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03.01>
- ② 학과 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과 교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학과 교수는 학과 학생들의 입학·졸업·교과과정·수업 등의 학사업무, 학생의 장학, 보건·후생·상벌 등 학생지도, 학생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1.27.>
- ④ 학과 교수는 학과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개정 2016.03.01>
- ⑤ 학과의 실험실습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습실 사용일지 작성 및 관리, 기자재 및 물품의 유지·보수·관리는 실습교과목의 담당교수가 담당한다. 단, 1과목 이상의 실습교과목이 실습실을 사용하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순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7><개정 2016.03.01>
- ⑥ 학과 교수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팀장의 업무지휘에 따라 간호인증평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03.05.>

#### 제6조(위원회)

- ① 학과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 ② 학과의 위원회는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간호학과 인사위원회, 간호학

과 교육과정위원회, 간호학과 예산심의위원회, 간호학과 장학위원회,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로 구성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개정 2020.03.05>

③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따로 정한다.

### 제7조(학과 운영 지원인력)

① 학과 운영 지원을 위해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행정조교는 교무, 학사, 학생, 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개정 2020.03.05>

#### 1. 교무지원 업무

- 교내 각 부서로 발송되는 협조문 작성
- 교내·외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입학 및 졸업 관련 업무 보조
- 수시모집 면접 준비 및
- 교원 연수, 출장허가 및 명령원, 관내출장신청 관련 업무 보조
- 학생 및 교수 공지사항 안내 및 문자 발송
- 학과 회의 보조
- 대학본부 협조사항 지원 업무
- 기타 교무지원 업무

#### 2. 학사지원 업무

-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관련서류 작성과 보조
- 각종 시설사용 및 기자재 신청서 작성 등의 일반관리 업무
- 법인카드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 등의 회계관리 업무
- 교직 교과목 이수 관련 업무
- 학과 사무실의 유지 및 관리
- 각종 업무관련 서류 보관
- 기타 학사지원 업무

#### 3. 학생지원 업무

- 학생증 및 학생명단과 연락처 등 각종 학생관련 서류 작성
- 강의실 열쇠 대여 및 물품관리
- 강의용 교육기자재와 물품의 유지·보수·관리

- 각종 학생행사 진행 보조 및 관련서류 작성
- 학과 홈페이지 입시 Q&A 관리 및 병원 채용 공고 공지
- 학생 취업관련 보조 업무, 미취업자 조사
- 면허증 및 자격증 관련 업무 보조
- 휴학, 복학, 학생지도, 장학업무 보조
- 방학 중 기숙사 신청 등 학생복지 관련 업무
- 기타 학생지원 업무

#### 4. 교육지원 업무

- 교육과정표와 강의시간표 작성 및 출석부 관리
- 전자출결 관련 업무
- 강의자료 복사 및 배부
- 성적평가와 관련된 각종 시험지 복사 및 관리
- OMR 답안지 채점 및 결과 산출
- 기타 수업보조 업무

③ 실습조교는 실습교육 지원 및 자율실습지도,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조문신설 2012.11.27.><개정 2019.02.25><개정 2020.03.05>

##### 1. 실습교육 지원 및 자율실습지도 업무(주)

- 학생 자율실습지도
- 학생 자율실습을 위한 물품 신청에 따른 준비 및 관리
- 기본간호학실습이나 통합간호실습 등 교내실습교육 지원
- 임상실습관련 공문 및 협조문 작성 보조
- 실습계획표 및 실습지별 학생 명단 작성 등 임상실습 관련 업무 보조
- 시뮬레이션센터 및 시뮬레이터 유지 관리업무 보조
- 기타 실습관련 지원 업무

##### 2.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업무(주)

- 학생 자율실습지도
- 학생 자율실습을 위한 물품 신청에 따른 준비 및 관리
- Nursing Training Center, Nursing Simulation Center, 자율실습실, 건강사정실습실, 기초과학실습실, Nursing Skill Practice Room, BLS센터 등 교내실습실 유지 및 관리
- 실습기자재와 실습물품 청구·유지·보수·관리업무 보조
- 실습실 물품 및 기자재 관리 업무
- 기타 실습관련 단순보조 업무

## 제 2 장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규

제정 2016. 03. 01.

개정 2017. 03. 01.

개정 2018. 01. 02.

일부개정 2019. 02. 25.

일부개정 2020. 03. 01.

일부개정 2022. 03. 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과정의 편성)

-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본 대학 학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간호학과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② 교과목 개설은 간호학과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한 교과목,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령에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및 학교 운영방침에 따른 교과목으로 선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운영)

- ①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후 개편 시에는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간호학과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고 개선한다.
- ② 간호학과 교육목표 평가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는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이수구분)** 간호학과의 교과목은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된다.

- ①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구분된다.
- ② 전공교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된다.

### 제5조(이수단위)

- ① 간호학과의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점으로 하며, 이수허용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단,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교직 교과목을 최대 수강신청 학점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01.02>
- ② 교양 교과목은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③ 전공기초 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은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④ 전공 교과목 중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교과목은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로 이수하도록 한다.
- ⑤ 각 교과목별 필수 교과목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실습)** 간호학과의 실습교육은 교내 실습과 임상실습으로 구분하며, 실습에 관련한 사항은 본 학과의 실습교육운영내규에 따른다.

### 제7조(성적)

- ① 학기 중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출석 및 결석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성적평가등급 방법 및 분포비율은 본 대학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졸업학점)** 간호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본 대학 학칙에 따라 13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실습교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02.><개정 2022.03.01.>

### 제9조(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기준)

- ① 간호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의 이수여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기준에 따른 교양학점 25학점 이상, 인문사회과학교과목 8학점 이상, 전공기초교과목을 제외한 전공교과목 70-90학점, 임상실습 22학점 이상, 졸업종합시험 등의 통과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03.01.><개정2019.02.25.><개정2022.03.01.>
- ② 졸업사정에서 탈락여부는 전체 대학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탈락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 학기로 졸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개정

2019.02.25>

제10조(기타) 본 내규에 없는 기타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장 간호학과 실습교육운영 내규

제정 2010. 12. 31.	개정 2011. 09. 27.
개정 2012. 11. 27.	전면개정 2016. 03. 01.
개정 2016. 12. 26.	일부개정 2019. 02. 25.
일부개정 2020. 03. 05.	일부개정 2022. 03. 01
일부개정 2023. 01. 0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와 실습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간호학 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개정 2016.03.01>

**제2조(실습 구분)** 실습은 실습실 실습(교내)과 임상실습(교외)으로 구분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실 실습”이라 함은 기본간호학실습, 핵심간호술강화실습, 통합간호실습 등 교내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습을 말한다.<개정 2019.02.25>
  2. “임상실습”이라 함은 의료기관, 지역사회기관, 특화병원 또는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을 말한다.<개정 2019.02.25>

#### 제4조(실시 기간)

- ① 교육과정표 해당 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방학 기간에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방학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 국가비상사태나 감

염병위기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는 교육부 지침이나 대학의 규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개정2020.03.05>

## 제2장 실습실 실습

### 제5조(실습교과목 개설)

- ① 학과는 해당 교과과정의 교과목으로 실습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 ②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신청한다.
  1. 개설교과목 및 학점 수
  2. 실습의 목적과 내용
  3. 실습학점 당 실습시간
  4.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
  5. 그밖에 개설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습실 실습 운영)

- ① 실습실 실습은 1학점 당 2시수로 15주 교육과정으로 한다.
- ② 실습실 지도교원의 시수 인정은 1학점 당 2시수로 한다.
- ③ 실습실 지도교원 대 학생 배치 비율은 1:20 이하로 유지한다.<개정 2023.01.04.>
- ④ 실습실 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습 교과별 실습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전임교원이 일부 학점을 담당한다.
- ⑤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습환경, 실습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 학생의 고충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 ⑥ 실습실 지도교원은 실습실 실습 전 안전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신설 2023.01.04.>

### 제6조의 2(실습실 실습 운영 예외)

- ①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재난 등 실습실 실습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습실 실습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경우 실습실 실습 교육의 질 유

지를 위해 실습시간, 구체적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의 지침과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기준 적용 방안 안내에 따라 실습교육을 진행한다.<신설 2020.03.05.>

### 제6조의 3(실습실 실습 안전 관리 및 학생 인권보호)

- ① 학과는 학생이 안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 전 안전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사고 발생 시 실습실 실습 학생안전 및 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조치한다.<지침 2><신설 2023.01.04.>

### 제7조(실습실 실습 지도교원의 자격 기준)

- ① 실습 지도교원의 자격은 석사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전임교원이나 시간강사로 한다.<개정 2023.01.04.>
- ② 실습 조교가 실습시간 중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시범, 실습지도를 보조하여 실질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습실 학생 사전교육)

- ①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습일정, 준비사항, 실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 ②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실습실 안전관리와 인권보호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7.03.05.>

### 제9조(실습실 학생의 의무)

- ① 질병, 상(喪), 사고로 인하여 결석하게 되면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반드시 당일 실습 시작 전에 보고한다.
- ② 실습 학생은 실습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실습 학생은 실습 전 실습교과목과 관련된 수기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 ④ 실습 시 외모를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르게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실 기자재나 물품사용 및 간호행위에 있어서 윤리성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실습 도중 실수나 사고 및 기물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담당 교

수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학과에서는 본 대학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⑥ 실습 학생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안전한 실습을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실습실 의무 위반자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습 태도가 불량한 자
2. 고의로 실습 분위기를 저해한 자
3. 실습 안전 및 인권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는 자<신설 2023.01.04.>

제11조(실습평가) 실습실 실습 성적평가는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가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평가계획에 의해 평가한다.

#### 제12조(자율실습실 운영)

- ① 자율실습실은 실습 학생의 실습능력 증진과 자율적인 연습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 상시 개방하여 운영한다.
- ② 자율실습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확보하며 실습조교는 실습실에 상주한다.
- ③ 자율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 조교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신청하고 자율실습실을 사용한다.
- ④ 자율실습실은 학생들이 개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게시되어야 한다
- ⑤ 실습조교는 기본간호술 및 핵심간호술 시범과 지도, 물품준비, 실습실 사용관리, 자율실습운영일지 작성 등 자율실습 업무를 전담한다.<개정 2020.03.05.><개정 2023.01.04.>

#### 제13조(시뮬레이션 실습 운영)

- ① 시뮬레이션 실습은 1학점 당 2시수로 운영한다.
- ② -삭제-<삭제 2019.02.25>
- ③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는 8명 이하를 유지한다.
- ④ 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임상실습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을 위해 지원인력을 확보한다.  
제14조(기타)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결정한다.<개정 2016.03.01>

### 제3장 임상실습

#### 제15조(임상실습 교과목 및 학점)

- ① 학과의 임상실습 교과목은 총 12개 교과목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6.03.01.><개정 2022.03.01.>
- ② 임상실습교과목은 각 전공 교과별로 성인간호학실습(1) 2학점, 성인간호학실습(2) 2학점, 성인간호학실습(3) 2학점, 지역사회간호학실습(1) 2학점,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1학점, 아동간호학실습 2학점, 여성건강간호학실습 2학점, 정신간호학실습(1) 2학점, 정신간호학실습(2) 1학점, 간호관리학실습 2학점, 노인간호학실습 2학점, 임상역량강화실습 2학점으로 총 2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03.01.><개정 2016.12.26.><개정 2019.02.25.><개정 2020.03.05.><개정 2022.03.01.>

#### 제16조(임상실습기관과의 협력)

- ① 학과는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하여 임상실습기관과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습전 협의회, 실습간담회, 실습평가회 등을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20.03.05>
- ② 임상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지도자를 실습단위별로 100% 확보하며 정기적으로 협의한다.<개정 2012.11.27> <개정 2020.03.05>

#### 제17조(임상실습기관의 선정 및 운영)

- ① 임상실습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기관으로 각 전공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검토하고 간호학과 교육목표와 해당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6.03.01><개정 2023.01.04.>

1.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단,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실습기관 수의 40% 미만으로 제한함), 지역거점공공병원, 특화병원(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재활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료기관(보건복지부 선정)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 3. 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 4. 지역사회 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 ② 선정된 실습기관과는 매년 실습 시작 전 문서화된 협약체결을 통하여 실습기관으로 채택한다.<조문 신설 2011.09.27>
- ③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실습부서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본 대학과 협의한다.

**제17조의2(원거리실습 지원)** 대학은 원거리 임상실습이 있는 경우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한 교통편, 식비 등을 지원한다.<신설 2020.03.05.>

**제18조(임상실습 운영)**

- ① 임상실습교육은 1학점 당 실습시간 3시간, 주당 4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20.03.05>
- ② 임상실습 시간은 2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운영하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03.01.>
- ③ 임상실습은 실습 단위 당 학생 수를 최대 8명 이하로 배치한다.
- ④ 임상실습 지도교원의 실습지도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학생 임상실습 시간의 10% 이상을 지도한다.
  - 2. 전임교원 실습지도 시간은 학기별 전체 임상실습지도시간의 30% 이상을 담당한다.
  - 3. **임상실습 지도교원**의 시수 인정은 1학점 당 1시수로 한다.
- ⑤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습 교과목별 임상실습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⑥ 임상실습지도를 위하여 실습기관의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촉한다.<개정 2012.11.27>
- ⑦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실습 전 협의회, 간담회, 평가회를 통해 임상실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 ⑧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임상실습 전 안전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신설 2023.01.04.>**

**제18조의 2(임상실습 운영 예외)**

① 제 18조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재난 등 임상실습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임상실습을 대체한 교내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상실습을 교내실습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경우 임상실습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실습시간, 구체적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의 지침과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기준 적용 방안 안내에 따라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신설 2020.03.05>

### 제19조(임상실습 지도교원 및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자격기준)

①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임상실습 강사)로 석사학위 이상,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01.04.>

②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학이 위촉한 현장실무자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학사학위 이상,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1.27>

### 제20조(출결)

① 출석 평가 시 본 대학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

② 다음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공인출석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교과목의 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01.04.>

1. 질병검사, 예비군훈련의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할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
4.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
5.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
6.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
7.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법정 격리기간
8. 신종 감염병에 따른 백신접종의 경우 세부지침에 따른 인정기간

### 제21조(임상실습 학생의 의무)

① 임상실습 학생은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임상실습** 학생은 실습 전 실습 교과목과 관련된 기본 및 전문 간호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임상실습 도중 실습지에서의 실수나 사고 발생 시 즉시 담당 교수와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임상실습 중 실습 규정 위반, 실습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 임상실습 안전 및 인권 관련 사항 위반 시는 학부 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F'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01.04.>**
- ⑤ **임상실습** 학생은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동의서를 작성하고 준수한다.<신설 2019.02.25.>

### 제22조(임상실습 평가)

- ① 임상실습 성적 평가는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 임상실습강사,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평가와 학생의 자가 평가 및 동료평가를 포함한다. 단, 학생의 자가 평가와 동료 평가의 성적반영 유무와 반영 정도는 실습 교과목의 담당 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7>
- ② 임상실습 평가방법 및 기준은 강의계획서 및 실습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5.>

### 제23조(임상실습 안전관리)

- ① 간호학과는 학생이 안전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안전·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7.03.01>
- ② 간호학과는 임상실습 전 기본적인 감염관련검진사항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 ③ 간호학과는 임상실습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검진사항 및 예방접종에 대하여 학생 지도를 한다.
- ④ 간호학과는 임상실습 중 사고에 대비한 대학의 보험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 ⑤ **-삭제-<개정 2023.01.04.>**

### 제23조의 2(임상실습 학생 인권보호)

- ① 간호학과는 학생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임상실습 전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은 의심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습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한다.<신설 2020.03.05.>

#### 제24조(실습학생의 주의의무)

- ①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시 감염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운영지침**을 준수한다.<지침 1><개정 2023.01.04.>
- ②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시작 전 기본적인 감염관련 검진사항과 흉부엑스선 촬영 및 예방접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임상실습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습학생의 과실로 의료기기 파손 등 실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학생은 물품(분실·손실·파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실정도에 따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0.03.05.>

#### 제25조(회의록)

- ① 임상실습 운영과 관련된 회의 결과는 학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학과 전체 교수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1.09.27>

제26조(기타) 기타 구체적인 실습지침은 실습 교과목별 실습지침서에 명시한대로 따르며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결정한다.

## 제4장 간호학과 실험실습비 운영 내규

제정 2010. 02. 24	개정 2012. 11. 27.
개정 2013. 12. 09.	개정 2013. 12. 16.
개정 2014. 12. 15.	개정 2015. 01. 25
개정 2015. 12. 16.	개정 2015. 12. 15.
전면개정 2016. 03. 01.	개정 2016. 12. 19.
개정 2020. 03. 05	일부개정 2023. 01. 04.

**제1조(목적)** 학과의 실험실습교과 교육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실험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6. 01.25><개정 2016.03.01>

**제2조(정의)** <삭제 2020.03.05>

**제3조(예산편성 및 집행)**

- ① 실험실습비는 재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 이상 교비회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편성된 예산의 80% 이상 집행한다. 다만, 실습기자재 구입비와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실험실습비 예산의 30%범위 내에서 국고회계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 03.05><개정 2023.01.04.>
- ② 학과 실험실습비는 편성된 학과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학과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03.01><개정 2016.03.01.><개정 2020.03.05>

**제4조(사용범위)**

- ① 실험실습비는 실습기자재구입비, 실습기자재유지보수비, 실습지침서 제작비, 실습재료비, 실습지도 회의비, 실습지도교통비, 실습지도비(실습기관 실습비), 실습교육과정 워크숍비, 실습교재 개발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전면개정 2020.03.05>

### 제5조(예산안 작성 및 승인)

- ① 학과 예산심의위원회는 실험실습비를 편성하여 심의·의결하고, 대학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산을 확정한다.<개정 2012.11.27><2015.09.01> <개정2016.03.01>
- ② - 삭제 -<개정 2012.11.27>
- ③ - 삭제 -<개정 2020.03.05>
- ④ 총장의 승인을 받은 실험실습비는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가집행) <삭제 2020.03.05>

### 제7조(집행절차)

- ① 매학기 실험실습비는 예산안에 의거하여 집행건 발생 시 협조공문(실험실습비 집행내역서, 물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대학 담당부서로 발송한다.<개정 2012.11.27>
- ② 물품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삭제 -
- ④ 실험실습비는 1학기는 8월까지, 2학기는 다음해 2월까지 집행을 완료한다.<개정 2020.03.05.>

### 제8조(실습기자재 및 물품관리)

- ① 구입한 실습기자재나 물품에 대해 학부(과)장은 인수·검수하여 확인서에 서명·날인한다.<개정 2016.03.01>
- ② 대학 담당부서의 실습기자재관리대장 또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며 학과에도 동일한 관리대장(복사본)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③ 매년 대학의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 관리한다.
- ④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와 시설은 개인이 전용할 수 없으며 학과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3.01>
- ⑤ 학과는 실험실습비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재물조사 감사 등에 대비하여 집행공문 사본과 실험실습비 지출에 관계되는 집행내역서류의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한다.<개정 2016.03.01>

### 제9조(실습소모품 관리)

- ① 학과에서는 효과적 실습을 위해 학기별로 소모품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한다.<개정 2016.03.01>
- ② 실험실습비의 계획적 집행으로 매학기 개강 전에 실험실습소모품이 구입되어 실험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간호학과 학생지도 운영 내규

제정 2010. 02. 24.

개정 2012. 11. 27.

개정 2013. 12. 12.

전면개정 2016. 03. 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학생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개정 2016.03.01>

**제2조(구성)** 학과장은 교수회의를 거쳐 간호학과 교수 중 학생평생지도교수에 위촉한다. 다만, 보직 및 임용구분에 따라 적절한 수의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7><개정 2013.12.12><개정 2016.03.01>

### 제3조(기능)

- ① 학생지도교수는 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지도를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지도한다.
  1. 학습지도 - 성적, 수강신청 및 변경, 학점관리, 휴·복학 지도 등<개정 2012.11.27>
  2. 생활지도 - 생활관 지도, 학교생활 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멘토링 지도 등
  3. 진로지도 - 취업 상담, 추천서 발급, 스펙 관리 등
  4. 기타 학생활동 및 학업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방법)

- ① 학생지도교수는 학기 초 학생들의 상담시간을 계획하여 게시한다.
- ② 학생의 입학 시부터 졸업 이후까지 연계하여 지도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3.12.12>
- ③ 상담시간 이외 개별 학생지도가 필요할 경우 학생과 별도로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생상담 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단, 지도교수 변경 시 변경된 지도교수에게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개정 2013.12.12>

⑤ 작성된 학생상담일지는 졸업 후 수합하여 학과 사무실에 보관하며 추후지도에 활용한다.<개정 2012.11.27><개정 2013.12.12.><개정 2016.03.01>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장 간호학과 기자재 확보 및 유지·관리 내규

제정 2017. 03. 01.

개정 2020. 03. 05.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실습기자재의 확보 및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내규에서 기자재라 함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도구, 기계, 장비, 모형, 표본, 시청각학습자료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기자재 사용 및 관리 책임자)**

- ① 본 대학 간호학과의 기자재 사용 및 관리 책임자는 학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03.05.>
- ② -삭제-

**제4조(기자재 신청)** 기자재 관리 책임자는 매년 대학 및 학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기자재 신청서식에 작성하여 대학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제5조(기자재 관리의 원칙)** 기자재 관리 책임자는 기자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기자재는 인수받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2. 장기보관으로 인한 자연감소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유지 및 정비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특수물품은 별도 보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기자재 관리 업무)** 기자재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 대장 정리 및 비치 업무

2. 기자재의 안전한 사용, 보관, 보존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업무
3. 기자재에 관한 재물조사,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신청에 관한 업무
4. 기자재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
5. 기타 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7조(기자재 운영)** 확보된 기자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 용도가 없을 경우 기자재 관리 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자재 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기자재 유지·관리)**

- ① 학과 교수의 책임 하에 교육용 기자재는 행정조교가, 실습기자재는 실습조교가 매 학기 목록, 수량, 상태, 작동여부를 점검한다.<개정 2020.03.05.>
- ② 기자재의 고장, 수리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학의 “물품관리규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지원 부서에 신청한다.

**제9조(기자재 등재)** 모든 기자재는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자재 대장에 등록되며, 관리번호를 부여 받는다.

**제10조(기자재의 반출)** 모든 기자재의 학과 외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 및 학과의 행사, 수리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자재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기자재의 폐기 및 손·망실 처리)**

- ① 기자재의 폐기 및 손·망실 처리를 요할 때에는 본 대학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규정” 및 “물품관리규정 제14조와 제15조”에 의거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의 물품(분실·손실·파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② 기자재의 수리, 개선, 폐기 및 불용 결정 시에는 기자재 관리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한다.

**제12조(기자재 조사)** 기자재 관리 책임자는 대학이 정기적으로 연 1회 기자재 조사를 시행할 때 협조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기자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파손,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3.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4. 대학이 교육환경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기자재 조사결과)** 기자재 관리 책임자는 기자재 조사 결과를 학과 교수회의 시 공지해야 하며, 관리운영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및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내규에 없는 기타 사항은 본 대학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장 간호학과 장학지원 내규

제정 2017. 03. 01.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의 장학지원을 공정한 기준 하에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간호학과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장학금 종류 및 선정기준)

① 본 대학에서 매학기 선정하는 성적우수 및 기타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학의 장학규정과 장학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4조(특별장학금)

- ①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있을 때 간호학과 장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 후 대학에 추천한다.
- ② 특별장학금 선정기준은 기장학금 수혜액수, 성적, 가정형편, 지도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종합하여 정한다.

### 제5조(외부장학금)

- ① 외부장학금이 간호학과에 배정된 경우 간호학과 장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 후 대학에 추천한다.
- ② 장학금 선정기준은 외부에서 정한 특별한 조건이나 지정된 수혜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이 없을 경우 특별장학금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6조(학과발전기금장학금)

- ① 학과발전기금은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봉사활동이나 특별한 발전기금 장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 ② 장학금 지급 목적과 사유에 따라 신청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학과

발전기금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지원내규에 따라 심의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기타장학금)** 위 사항 외에 일회성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제8장 간호학과 위원회 내규

### 8-1.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내규

제정 2013. 02. 04.

전면개정 2016. 03. 01.

일부개정 2019. 02. 25

전면개정 2020. 03. 05.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간호학과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지칭함)”라 칭하며 본 대학 간호학과내에 둔다.<개정 2016.03.01>

**제2조(목적)** 이 내규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간호학과의 질 관리 및 중·장기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01>

####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개정 2020.03.05>

② 외부위원으로 대학 본부 보직자 및 동창회 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03.01><개정 2020.03.05>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3.01>

1. 간호학과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수립과 개정
3. 간호학과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과 집행
4. 간호학과 발전기금 모금 계획 수립 및 모금
5. 간호학과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을 위한 심의
6. 발전계획에 따른 추진과정과 집행실적 평가

#### **제5조(발전기금 집행 및 심의 절차)**

- ① 발전기금은 장학금 지원, 재학생 연구능력 지원, 글로벌 연수 지원, 지도자 인재양성 지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기타 학과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발전기금 사용 집행 안건이 발생했을 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발전기금 사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학 담당 부서로 협조문을 발송한다.<개정 2016.03.01>

#### **제6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8-2. 간호학과 인사위원회 내규

제정 2010. 02. 24.

전면개정 2016. 03. 01.

일부개정 2019. 02. 25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간호학과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지칭함)”라 칭하며 본 대학 간호학과내에 둔다.<개정 2016.03.01>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하여 간호학과 교직원의 인사를 심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개정 2013.12.12><개정 2016.03.01>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간호학과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0.15><개정 2016.03.01><개정 2019. 02. 25>
- ② - 삭제 -

### 제4조(기능)

- ① 학과 신규채용 교원의 기초심사<개정 2012.10.15.><개정 2016.03.01>
- ② 삭제<삭제 2013.12.12>
- ③ 삭제<삭제 2015.02.13>
- ④ 삭제<삭제 2015.03.01>

###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가부로 의결한다.<개정 2012.10.15><개정 2019. 02. 25>

### 제6조(교원 신규채용 심사절차)

- ① 위원회는 교원 신규채용 시 본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따라 기초심사를 한다.
- ② 위원회는 간호학과 교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기초심사 결과를 대학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개정2012.10.15.>  
<개정2014.12.12><개정 2016.03.01>
- ③ 교원 신규채용 시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본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0.03.05>
- ④ -삭제-

**제7조(교원 업적 평가) 삭제 <2013.12.12>**

**제8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참여 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10.15>  
<개정 2013.12.12>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8-3.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정 2010. 02. 24.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02. 12.

개정 2016. 02. 22.

전면개정 2016. 03. 01.

일부개정 2019. 02. 25.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본 대학 간호학과 내에 둔다.<개정 2016.03.01><개정 2019.02.25>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01>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간호학과 교수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학과장(평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6. 03.01><개정 2019.02.25>
- ②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회의록을 기록한다.
- ③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의 사안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6.02.22.><개정 2020.03.05>
  1. 학과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에 관한 사항
  2.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4. 졸업생 이수학점 관리

5. -삭제-

6. 기타 교육과정과 교과운영에 관련된 사항

####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고) -삭제-

제7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과 예산에 편성된 경비로 충당한다.<개정 2016.03.01>

#### 제8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제9조(기타)

-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② 본 내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

## 8-4. 간호학과 예산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2010. 02. 24.	개정 2011. 11. 29.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12. 15.
개정 2015. 09. 01.	개정 2015. 12. 15.
전면개정 2016. 03. 01	개정 2016. 12. 19.
일부개정 2019. 02. 25	전면개정 2020. 03. 05
일부개정 2023. 01. 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01><개정 2016.03.01>

###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간호학과 전임교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11.29><개정 2016.03.01><개정 2019. 02. 25>
- ②<삭제 2014.12.15>

### 제3조(기능)

- ① 위원회는 간호학과의 등록금에 비례하여 학과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개정 2016.03.01>
- ② 위원회는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개정 2011.11.29><개정 2016.03.01>
- ③ 학과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하며, 확보한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한다. 단, 국비지원이 있을 경우 교비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 제4조(예산편성시기)

- ①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회계연도 시작 전의 1~2월 중 예산을 편성한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집행)

- ① 학과의 예산에는 실험실습비, 교육관련 경비, 교수연수 및 자기개발경

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4.12.15><개정 2016.03.01>

② 학과의 실험실습비는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 이상 확보하여 80% 이상 집행한다.<개정 2016.03.01.><개정 2023.01.04.>

③ 교수 연수비 및 자기개발 지원비는 전임교수 1인당 100만원 이상으로 편성한다.<개정 2016.12.19>

**제6조(사용범위)** 학과 예산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3.05.>

① 실험실습비(실습기자재구입비, 실습기자재 유지보수비, 실습지침서 제작비, 실습재료비, 실습지도회의비, 실습지도교통비, 실습교과과정워크숍비, 실습교재 개발비 등)

② 교육과정 개발비(CQI보고서 작성지원금 포함)

③ 학생자치활동지원비(학술, 봉사, 취미활동 등)

④ 학생활동지원비(학과적응프로그램, 직업적응프로그램, 인성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교수개발 및 연수지원비(세미나 개최, 교수워크숍 개최비 포함)

⑥ 학교현장실습운영비

⑦ 회의비(교학간담회, 학과 제위원회 회의비 등)

⑧ 평가관련 경비

⑨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예산 심의 및 집행 절차)**

① 위원회는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해 학과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11.29>

② 위원장은 예산확보와 편성을 위하여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학과예산 편성에 대한 협조문을 대학 담당 부서로 발송하며, 대학 담당 부서장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산을 확정한다.<신설 2015. 09. 01>

④ 학과는 예산 집행 시기에 확보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학 담당 부서로 협조문을 발송한다. <개정 2011.11.29><개정 2016.03.01>

⑤ - 삭제 -<개정 2011.11.29>

**제8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8-5. 간호학과 장학위원회 내규

제정 2012. 11. 27.

전면개정 2016. 03. 01.

일부개정 2019. 02. 25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간호학과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본 대학 간호학과 내에 둔다.<개정 2016.03.01>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 장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01>

**제3조(구성)** 위원회는 간호학과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03.01><개정 2019. 02. 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 장학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3.01>

1. 총 등록금 대비 학과 교내 장학금 확보에 대한 사항
2. 학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지급기준
3. 학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4. 기타 학과 장학 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8-6.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내규

제정 2015. 10. 16.  
개정 2019. 02. 25

개정 2016. 03. 01.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본 대학 간호학과 내에 둔다.<개정 2019. 02. 05>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02. 05>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간호학과 교수 및 산업체 인사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주임교수로 하고 산업체 인사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03. 01> <개정 2019. 02. 05>
- ②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회의록을 기록한다.

###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공심화과정 지원자의 전문학사과정의 이수 교과목 심의 및 전적 대학 학점 인정
  2. 학사학위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3. 학사학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4.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사항
  5. 출결관리, 성적분포, 휴강 및 보강 등 교육운영 질 관리
  6. 교육활동 및 교육운영 결과 자체평가
  7. 교육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8. 학위수여 대상자 및 졸업포상 대상자 심의<개정 2019. 02. 05>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회의 결과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한다.<개정 2019. 02. 05>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를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02. 05>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기타)**

-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② 본 내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8-7.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제정 2020. 03. 05.

개정 2022.03.01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본 대학 간호학과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간호학과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영역 담당 교수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학습지도
2. 학생의 생활지도
3. 학생의 진로지도
4. 기타 학생 활동의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지침 1>

##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지침

### 1. 간호학과 임상실습 목적

간호학생은 간호문제를 지닌 대상자들을 전인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간호학 임상실습을 행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의 전문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2. 임상실습 목표

- 1)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통하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간호술을 습득하고 이를 모든 현장간호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2)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명의식을 기른다.
- 3) 국가 보건 건강관리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건강관리자로서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 다른 의료팀이나 건강관리 팀원과 협력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화로운 인간성을 기른다.
- 5) 모든 간호 대상자에게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3. 임상실습 지침

- 1) 임상실습은 3, 4학년별로 A, B반과 C, D반이 2주일씩 교대로 실시한다.
- 2) 실습학생은 임상실습에 임하기전 실습전반에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한다.
- 3) 실습학생은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 4) 실습학생은 실습 전 실습교과목과 관련된 기본 및 전문 간호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 5) 모든 임상실습은 담당교수, 임상실습강사,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지도하에 수행한다.
- 6) 임상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단, 임상실습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	부서/Duty		근무시간
임상 (월~금)	Ward, ICU, ER, OR, DR, NUR	낮번	07:00 ~ 16:00
		초번	13:00 ~ 22:00
	주사실, 인공신장실, 외래		08:00 ~ 17:00
지역사회(월~금)	보건소(보건진료소), <b>산업보건협회</b> 정신건강복지센터, <b>낮병원</b>		09:00 ~ 18:00
재택실습/교내실습(월~금)	-		09:00 ~ 18:00

- 7) 임상실습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고 발생 시는 실습시작 전에 담당교수 및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고, 1주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실습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임상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경우(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름), 당해 학기의 임상실습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실습을 하여야 하며, 졸업 시까지 총 임상실습 교과목 이수학점 2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9) 평가는 과목별 임상실습평가표를 사용하여 실습담당교수와 임상실습현장 지도자가 평가한다.
- 10) 출석평가는 본 대학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른다.  
다음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에는 공인 출석계(별지)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교과목의 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징병검사, 예비군훈련의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 ②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할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 ③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
  - ④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
  - ⑤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
  - ⑥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
  - ⑦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법정 격리기간
  - ⑧ 신종 감염병에 따른 백신접종의 경우 세부지침에 따른 인정기간
- 11) 실습 중 실습지침을 위반하거나 실습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과 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F'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12) 임상실습 시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인관계에 임하

며, 병실 기자재나 물품사용 및 간호행위에 있어서 윤리성과 경제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실습학생의 실수나 사고로 실습부서에서 물품이나 기구의 손상이 있는 경우 배상은 기관과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임상실습 운영 예외

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재난 등 임상실습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임상실습을 대체한 교내실습, 재택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상실습을 교내실습, 재택실습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경우 임상실습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실습시간, 구체적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의 지침과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기준 적용 방안 안내에 따라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 4. 실습 복장

1) 임상실습 시는 실습복, 흰색 양말, 간호화를 착용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현장 실습학생 명찰을 부착한다.

2) 실습복은 깨끗하게 준비하여 단정하게 입는다(수술실,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은 실습기관에 따라 지정된 특수 가운을 입고 내부 슬리퍼를 착용한다).

3) 스웨터는 실습복으로 지정된 것만 입는다.

4) 양말은 흰색을 착용하며 간호화는 단정하게 신는다(뒤축을 꺾어서 신지 않는다).

5) 단발머리는 실습복에 닿지 않도록 짧게 유지하며, 긴머리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하고 머리핀은 장식이 없는 검은색 핀을 사용한다.

6) 실습복 착용 시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7) 머리에 진한 염색, 지나치게 진한 화장, 손톱장식이나 손톱화장을 하지 않는다.

8) 초침시계, 검은색과 붉은색 볼펜, 실습 전용 노트를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 5. 태도 및 유의사항

1) 실습지의 모든 이들에게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대하며 항상 먼저 인사한다.

2) 실습지의 간호사와 의사는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환자는 “○○○

님”으로 부르며, 간호조무사는 “○○○씨”라 부른다.

- 3) 학생 상호간에도 “○○○씨”하고 부르며 존대말을 사용한다.
- 4) 실습지에서의 불필요한 사담을 금하며, 실습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5) 실습생은 실습지의 실습지도 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 6) 실습지에서 실습을 통해 알게 된 일을 외부(전철, 버스, 길거리 등)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 7) 각 실습지 탈의실 및 비품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하며 개인소지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 8) 병원 검사물 용지 등 병원 소모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9) 실습기간 중 실습장소 이외의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한다.
- 10) 환자 또는 보호자와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 11) 실습지에서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일 경우 간호학생임을 밝히고 예의바르게 받는다(예: “○○병동, 간호학생 ○○○입니다.”).
- 12) 활력징후를 포함한 간호술기는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며, 정상범주를 벗어나거나 측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13) 실습지에 따른 감염관리법을 준수한다.
- 14)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고 개인 및 학교의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한다.

## 6. 임상실습 학생안전 및 인권보호지침

### 1) 간호학과 임상실습 학생안전 및 인권보호지침의 목적

임상실습과 관련된 실습학생의 안전사고의 예방, 안전사고 시 관리,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하여 학생의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전파 감소 등의 활동으로 안전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임상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2) 임상실습 안전사고의 예방

- ① 임상실습 전에 B형간염 항체검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②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시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실습학생은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 ③ 실습지 기관에 따른 기구 및 비품은 사용법을 숙지한 후 임상실습 현장 지도자의 관리하에 사용한다.
  - ④ 실습지 기관에 따른 감염관리법을 준수하며, 무균술을 숙지하여 실습에 임한다.
- 3) 임상실습 안전사고의 발생 시 치료 및 관리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지침3>
- 4) 임상실습 안전사고의 발생 시 보고
- ①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체계**에 따라 보고한다.<지침4>
  - ②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도중 실습지에서의 실수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임상실습 지도교원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임상실습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안에 따라 임상실습 지도교원은 임상실습기관 및 현장지도자와 협의하고 학과의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④ 학과장은 사안에 따라 학과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보고체계와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한다.
- 5) 학생 인권보호
- ① 학생은 임상실습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② 학생은 임상실습 중 어떤 상황에서도 모욕적인 언어나 무시를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인권 침해로 인한 임상실습 거부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교과목 성적 및 태도점수 반영 등)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⑤ 학생은 임상실습 중 환자, 보호자, 방문객, 타 의료진 등이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에 노출되게 되는 경우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임상실습 지도교원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지침2>

## 간호학과 실습실 실습 학생안전 및 인권보호지침

### 1. 간호학과 실습실 학생안전 및 인권보호지침의 목적

실습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시 관리,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하여 학생의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 감소 등의 활동으로 안전한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2. 실습실 안전사고의 예방

- ① 실습지도교수는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시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실습학생은 실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 ② 실습에 따른 기구 및 비품은 사용법을 숙지한 후 실습지도교수의 관리하에 사용한다.
- ③ 실습에 따른 감염관리법을 준수하며, 무균술을 숙지하여 실습에 임한다.

### 3. 실습실 안전사고와 인권보호 위반 발생 시 보고

- ① 실습학생은 실습 도중 실수나 사고 발생 시 실습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후, 실습지도교수에게 실습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실습지도교수는 학과장에게 사고를 보고하고, 학과장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한다.
- ③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행동한다.<지침3><지침5>

### 4. 학생 인권보호

- ① 학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도록 한다.
- ② 학생은 실습실 실습 중 어떤 상황에서도 모욕적인 언어나 무시를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③ 실습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여 실습하도록 한다.
- ④ 학생은 인권 침해로 인한 실습 거부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학생은 어

떠한 피해(교과목 성적 및 태도점수 반영 등)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실습은 다른 수단(실습모형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은 실습 과정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즉시 실습지도교수나 학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고 대응 매뉴얼

### 1. 실습 중 사고(부상)시 응급처치 방법

사고 종류	응급처치법
혈액, 체액이 피부에 튀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어내고 점막에 튀었을 경우 eye washer 혹은 생리식염수로 1~2분 세척한다.</li> </ul>
화학물질이 튀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이 옷이나 신발에 묻은 경우 신속히 탈의한다.</li> <li>- 화학물질이 몸에 튀었을 경우 비상샤워기로 15분 이상 몸을 충분히 세척한다.</li> <li>-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비비지 말고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li> </ul>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상 부위에 붙어 있는 옷 등은 제거하지 말고 더러운 물건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li> <li>- 깨끗한 수돗물로 10분 정도 냉각시켜 통증을 감소시킨다.</li> <li>- 소독 거즈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부위를 덮어준다.</li> <li>-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는다.</li> <li>- 물질은 터트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을 떼어 내지 않는다.</li> </ul>
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혈되는 상처부위를 압박한다(위급 시 의류를 잘라 사용).</li> <li>- 출혈이 멈춘 후에는 상처부위를 소독거즈로 덮어준다.</li> <li>- 소독거즈 근처로 압박붕대로 감아준다.</li> <li>-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더 세게 10분 이상 상처를 압박한다.</li> </ul>
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한 외상, 화상, 대출혈 등 물리적 손상과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탈진한 상태를 말한다.</li> <li>-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li> <li>- 출혈부위를 직접압박 방법으로 지혈한다.</li> <li>- 다리 부분을 15~25cm정도 높여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가도록 한다.(흉부나 뇌손상 환자 제외)</li> <li>- 골절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켜서 출혈유발과 쇼크악화를 방지한다.</li> <li>- 옷이나 담요 등으로 덮어 체온을 유지한다.</li> <li>- 환자에게 먹을 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li> </ul>
유독가스 휘발성 액체 증기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긴다.</li> <li>-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된 때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li> </ul>

## 2. 실습 중 주사침 찔림 사고 시

구 분	대응/조치사항
노출시 응급처치	- 바늘에 찔린 부위를 부드럽게 짜내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소독한다.
노출보고	- 실습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진료	- 감염원을 확인하다(HBV, HCV, VDRL, HIV 양성 등). - 응급실 혹은 감염내과 진료 후 처치 및 검사를 한다.
추후관리	- 해당실습기관 감염관리실에서 검토한다. - 학과와 학생위원회에서는 보험 등 추후관리 방안은 검토한다.
예방교육	-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 오염된 바늘, 수술칼, 뾰족한 기구는 조심히 다룬다. (기구 정리 시 포셉이나 기구사용) - 사용한 바늘은 다시 뚜껑을 씌우거나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주사바늘통에 즉시 버린다. - 주사바늘통은 2/3이상 차기 전에 폐기한다. - 사용기간이 완료된 주사바늘통은 뚜껑을 완전히 밀폐하여 수거한다. - 부득이 바늘 뚜껑을 씌워야 할 경우는 한 손으로 조작하여 바늘 뚜껑을 주사바늘에 씌운 후 닫는다. - 의료폐기물 박스를 다룰 때 손으로 누르거나 비닐을 빼고 모으는 행위를 피하고 필요시 집게 등의 도구 사용한다.

## 3. 실습 중 폭력 피해사고 발생 시

구 분	대응/조치사항
사고발생	- 실습 중 폭력 피해사고 발생 (폭언, 폭행, 협박, 성폭력, 성희롱 등)
사고전파	-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즉시 사고 내용을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 실습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 필요시 즉시 해당실습기관 보안팀 출동요청 및 경찰(112)에 신고한다.
사고대응	- 환자(보호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마찰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현장지도자 등에게 보고한다. -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다. -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경찰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한다.

구 분	대응/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취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li> <li>- 신체 피해 등이 있을시 실습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다.</li> </ul>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실습기관에서 사고분석 및 조치계획을 검토한다.</li> <li>- 학과 학생위원회에서 검토한다.</li> <li>- 필요시 진료 및 상담을 받는다.</li> </ul>

#### 4. 실습 중 감염(혈액/공기/비말/접촉) 노출 시

구 분	대응/조치사항
노출시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을 한다.</li> </ul>
노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즉시 사고 내용을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li> <li>- 실습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li> <li>- 노출 경로, 노출 시간 등을 보고한다.</li> </ul>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원을 확인한다(HBV, HCV, VDRL, HIV, 결핵, 수두, 대상포진, 백일해 등).</li> <li>- 응급실 혹은 감염내과 진료 후 처치 및 검사를 한다.</li> </ul>
추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실습기관 감염관리실에서 검토한다.</li> <li>- 노출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전파하여 동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li> </ul>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li> <li>-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절차를 준수한다.</li> <li>- 실습 기관의 감염성 질환 환자 주의 표지를 숙지한다.</li> <li>- 격리 유형에 따른 개인보호구 착용 내용과 방법을 숙지한다.</li> </ul>

#### 5. 실습실 화재 발생 시

구 분	대응/조치사항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실에서 화재발생</li> </ul>
사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발견자는 육성으로 ‘불이야’ 하고 동료들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가까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실시한다.</li> <li>- 다른 동료는 가까운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학교 당직실이나 소방서(119)에 화재신고하고 학과의 안전관리자(실습조교)와 안전관리책임자(실습실책임교수)에 사고내용을 즉각 알리고 학과에서는 대학의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팀)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li> </ul>

구 분	대응/조치사항
사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실에 공급되는 건물 외부 가스공급 밸브를 차단한다.</li> <li>- 화재주변으로부터 인화물질을 격리한다.</li> <li>- 실습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li> <li>- 실습조교 및 실습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화재가 발생한 실습실에 보관된 화학약품의 종류를 파악한다.</li> <li>-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비상통로를 이용하여 재실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대피 시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li> <li>- 이동 도중 연기에 휩싸이는 경우 손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빠르게 이동한다.</li> <li>- 아래층으로 대피를 못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다.</li> <li>- 화상을 입었을 경우 흐르는 깨끗한 찬물에 열기를 식히면서 구조를 기다린다.</li> <li>- 유독가스를 흡입 하였을 경우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옮기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li> </ul>
사고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장과 실습실 책임교수는 사고현황(원인 및 피해정도)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li> <li>- 화재발생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전파하여 동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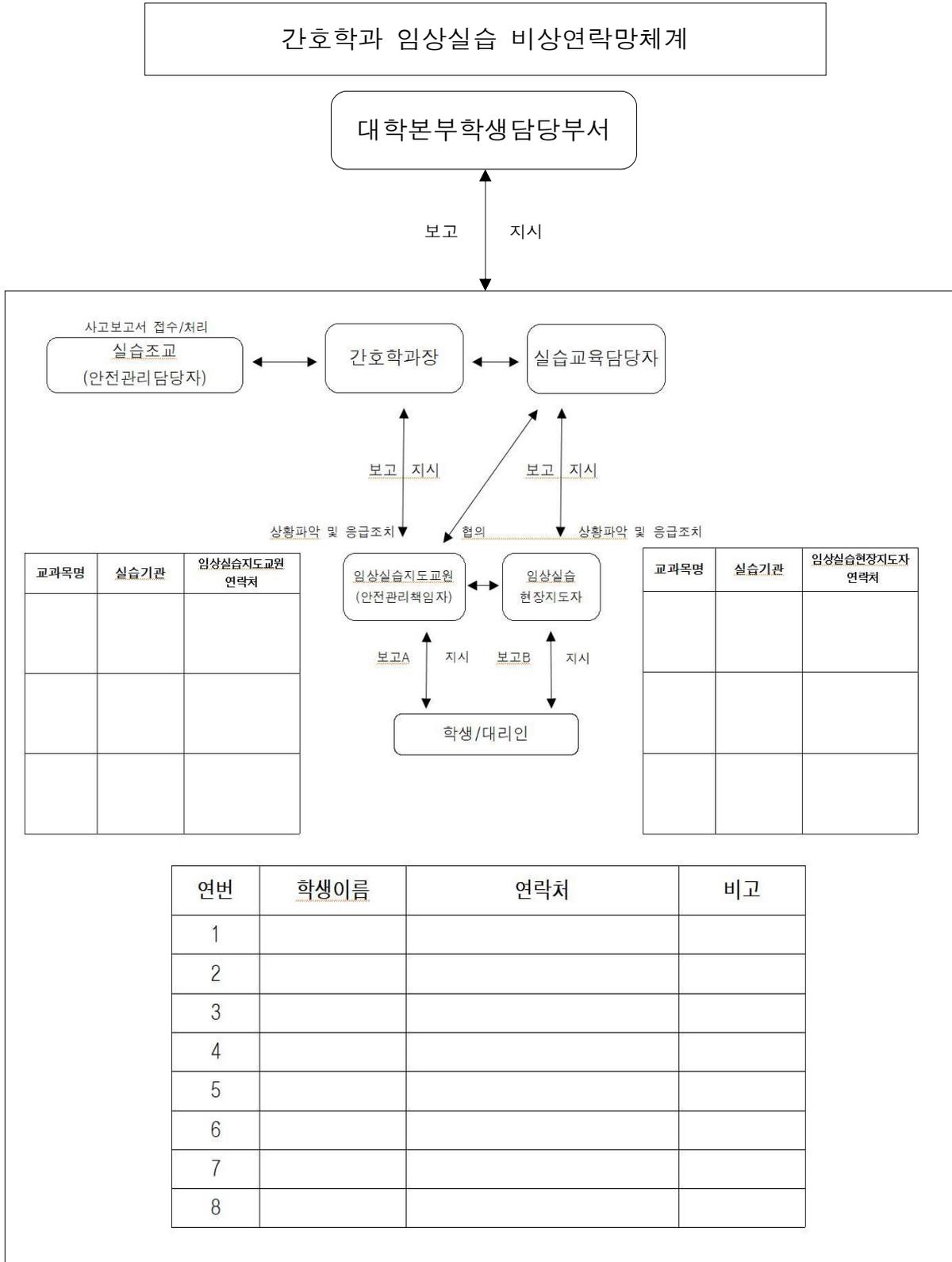
## 6.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 시

구 분	대응/조치사항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실에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li> </ul>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발견자는 동료들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가까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실시한다.</li> <li>- 다른 동료는 가까운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학교 당직실이나 소방서(119)에 화재 신고하고 학과의 안전관리자(실습조교)와 안전관리책임자(실습실책임교수)에 사고내용을 즉각 알리고 학과에서는 대학의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팀)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li> </ul>
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기기에 공급되는 콘센트 플러그를 전원에서 신속히 분리한다.</li> <li>- 필요시 사고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의 분전반 전원의 차단기를 내린다.</li> <li>- 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는 금지한다.</li> </ul>

구 분	대응/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li> <li>-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 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의 제거를 재차 확인한다.</li> <li>- 화재주변으로부터 인화물질을 격리한다.</li> <li>- 화상을 입었을 경우 흐르는 깨끗한 찬물에 열기를 식히면서 구조를 기다린다.</li> <li>- 유독가스를 흡입 하였을 경우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옮기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li> </ul>
사고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장과 실습실 책임교수는 사고현황(원인 및 피해정도)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li> <li>- 화재발생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전파하여 동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li> </ul>

<지침 4>

## 간호학과 임상실습 비상연락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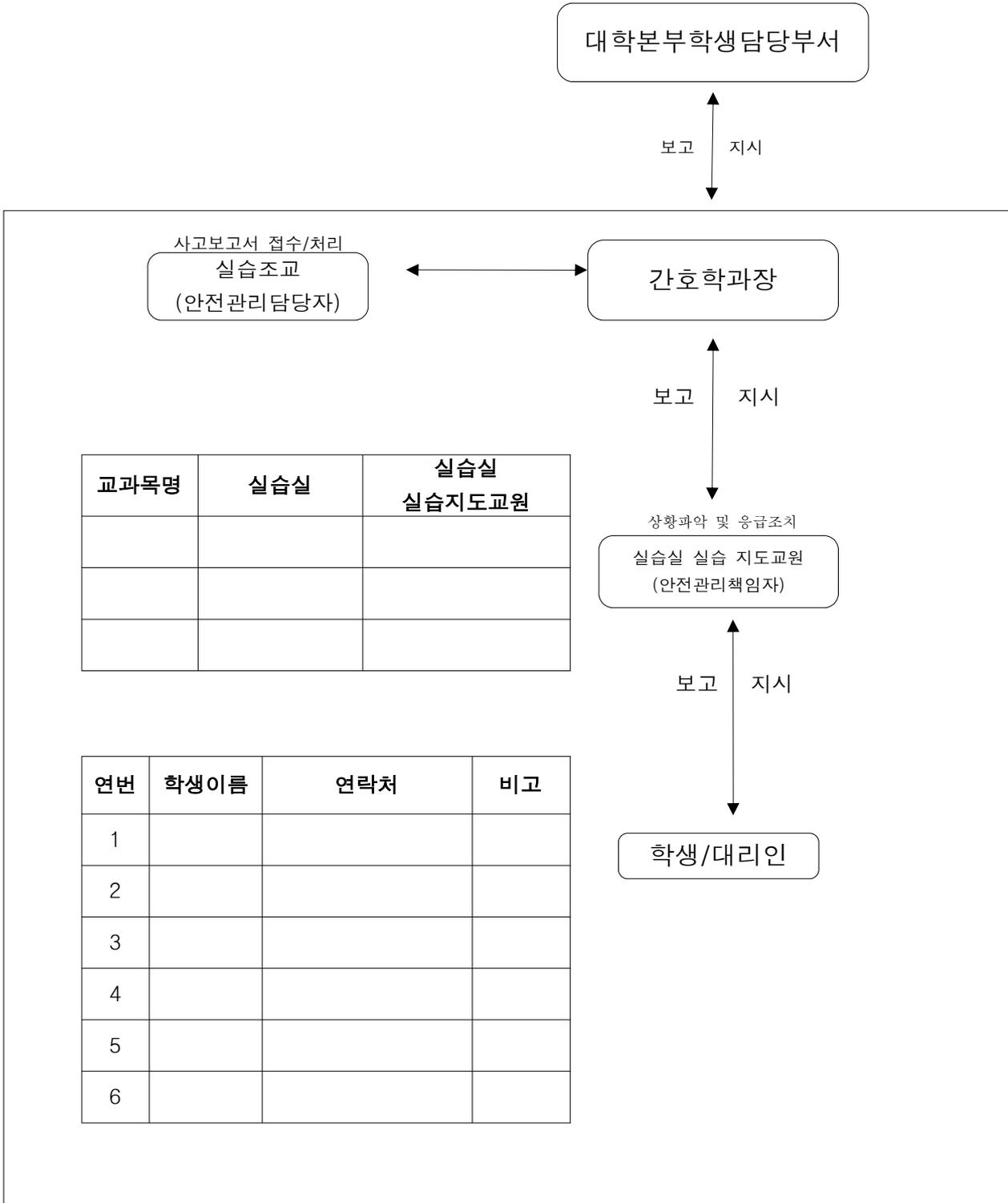


연번	학생이름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지침 5>

## 간호학과 실습실 실습 비상연락망체계

간호학과 실습실실습 비상연락망체계





<별지 제 2호 서식>

<b>임상실습 사고보고서</b>			
학생 이름		학번	
사고 발생 일시		실습지(부서)	
지도교수		실습지도교수	
<p>사고발생 경위 및 보고(6하 원칙에 근거 하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p>          			
<p>학생 면담 내용 :</p>          			
<p>실습지도교수의 소견 :</p>          			
<p>보고자: _____ (인)      보고일시: _____</p>			
<p>호산대학교 간호학과장 귀하</p>			

<별지 제 3호 서식>

교내실습 사고보고서			
학생 이름 / 학번	/		
사고 발생 일시		교과목명(실습실)	
실습지도교수		지도교수	
<p>사고발생 경위 및 보고(6하 원칙에 근거 하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p>          			
<p>학생 면담 내용 :</p>          			
<p>실습지도교수의 소견 :</p>          			
<p>보고자: _____ (인)      보고일시: _____</p>			
<p>호산대학교 간호학과장 귀하</p>			



